

# 2026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심리상담직(육아휴직대체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사회의 꿈을 펼쳐나갈 인재를 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장

## 1 모집 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근무지역)
심리상담직 (육아휴직대체직)	기간직	1명	경상남도 진주시

## 2 담당예정직무

채용분야	담당예정직무	비고
심리상담직 (육아휴직대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법무보호대상자 심리상담(개인·집단), 심리검사 및 해석</li><li>법무보호대상자 가족상담 및 자녀 학업지원 등</li><li>법무보호대상자 위험사례(중독, 정신질환 등) 관리</li><li>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li>외부 상담 전문기관 연계 의뢰</li><li>관할지역 내 교정보호관찰소 등 외부기관 출장 업무</li><li>기타 법무보호사업 수행 및 운영·행정업무 등</li></ul>	【별첨1】 직무기술서 참조

### 3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시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공단 정년)</li> <li>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li> <li>성별 · 학력 · 거주지 제한 없음</li> <li>공단 규정에 따라 생활관 비상대기 및 비상출동이 가능한 자</li> <li>공단 인사규정 등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li> <li><b>【별첨2】 임용 결격사유 참조</b></li> <li>임용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li> </ul>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li> <li>상담심리사 2급 이상 (※ 한국상담심리학회)</li> <li>임상심리사 2급 이상</li> <li>전문상담사 2급 이상 (※ 한국상담학회)</li> </ol> </li> </ul>

### 4 근무조건

구분	근무조건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260만원 상당(법정부담금 포함)</li> <li>※ 연장근무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별도 지급</li> </ul>
근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 법정휴게시간 1시간</li> </ul>
근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용일 ~ 2028년 8월 9일</li> </ul>
임용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2026년 6월 4일(예정)</b></li> <li>※ 근로계약기간 중 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계약 종료</li> </ul>

## 5 채용방법

서류전형  
(5배수)



면접시험



임용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6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기간	2026. 4. 17.(금) ~ 2026. 5. 4.(월)	18일
접수기간	2026. 4. 27.(월) 9시 ~ 2026. 5. 4.(월) 17시	8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2026. 5. 13.(수)	
면접시험	2026. 5. 18.(월)	* 장소 별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26. 5. 28.(목)	
이의신청	2026. 5. 28.(목) ~ 2026. 6. 11.(목)	15일
최종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2026. 5. 29.(금) ~ 2026. 6. 2.(화)	* 장소 별도 안내
임용	2026. 6. 4.(목) 예정	

※ 시험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각 전형별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채용사이트, 문자 등)

# 7 전형단계별 주요내용

## 원서접수

구분	내용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a href="https://recruit.incruit.com/koreha/">https://recruit.incruit.com/koreha/</a>)</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b>다른 접수방법은 인정 불가</b></li> <li>◦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 가능하며, <b>중복하여 지원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b></li> <li>◦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li> <li>◦ 접수기간 내에도 최종제출 처리된 지원서류는 <b>수정이 불가하며, 관련 유선 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제출 바람</b></li> <li>◦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b>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이 기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b></li> <li>◦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함</li> <li>◦ 전형 절차 진행 중 작성 및 제출한 내용이 <b>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b></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공단 채용사무 업무처리지침 제9조]</p> <p>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b>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b></p> </div>

## 서류전형

### 1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정량평가 (30점)	자격사항	15점	◦ 직무 관련 자격 중 소지한 자격의 최고 등급
	근무경력	15점	◦ 직무 관련 최초 자격 취득 후 직무 관련 경력 기간
정성평가 (70점)	자기소개서	35점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등
	직무수행계획서	35점	◦ 담당 예정 직무에 대한 역량 및 비전 제시 능력

- ※ 서류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5배수) 결정
- ※ 서류전형 합격자 최저점수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 가산특전을 제외한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 ※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 2 정성평가 평가척도

정성평가 평가척도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5 ~ 31점	30 ~ 26점	25 ~ 21점	20 ~ 16점

### 3 정량평가 평가척도

정량평가 평가척도				
자격 사항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li> <li>◦ 심리상담사 1급 (※ 한국상담심리학회)</li> <li>◦ 임상심리사 1급</li> <li>◦ 전문상담사 1급 (※ 한국상담학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li> <li>◦ 심리상담사 2급 (※ 한국상담심리학회)</li> <li>◦ 임상심리사 2급</li> <li>◦ 전문상담사 2급 (※ 한국상담학회)</li> </ul>	
	15점		10점	
근무 경력 (15점)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미만
	15점	13점	11점	9점

**\* 경력이란?**

-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 경력 증빙을 위한 서류(**재직(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 결과가 **모두 일치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경력에 대한 증빙 의무는 응시자에게 있으며, **증빙이 불가한 경우 허위 경력으로 간주함** (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겸직·시간제·외부강사 등의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 **통상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환산함**
- 재직(경력)증명서 상 **직무 관련 경력에 대해 명확히 기재 되어야 함**  
(예) 담당업무 : '심리상담 업무', '아동 청소년 상담' 등)
- 경력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경력에 해당되는 기관(조직)에 경력 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며**,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하여 **허위로 확인될 시 불합격 처리함**

**【정량평가 유의사항】**

① 자격사항

- 채용분야별 **평가척도 내 명시된 자격**으로 제한하여 평가
- 직무관련 자격사항 중 **최고 상위 자격증만 인정하며, 중복인정 불가**
- **자격증명·직종·급수(등급) 등을 누락·오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② 경력사항

- 직무 관련 자격 중 **최초로 취득한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근무 경력 평가**

\* 예) A 지원자가 심리상담사 1급(21년 3월 취득),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24년 5월 취득)  
2가지 직무 관련 자격을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심리상담사 1급을 최초 취득 자격으로 인정**  
A 지원자가 타 자격증을 우선 취득하였으나 미기재한 경우 최초 취득 자격으로 불인정

- **직무 관련 근무 경력이 아닌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시간제 근로의 경우 **통상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기간 환산하여 평가하며, 주 근로시간 미입력 시 경력 환산 불가로 평가에서 제외**

※ 지원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지원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추후 면접전형 응시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응시원서와 미일치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시험대상	<b>서류전형 합격자</b>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구술면접</b>(경험 · 상황 · 인성면접 등)</li> <li>◦ 평정요소 항목 당 20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정</li> <li>◦ 면접 시험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b>'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 1가지</b>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background-color: #1a3d4d; color: white;">탁월</th> <th style="background-color: #1a3d4d; color: white;">우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1a3d4d; color: white;">보통</th> <th style="background-color: #1a3d4d; color: white;">미흡</th> <th style="background-color: #1a3d4d; color: white;">불량</th> </tr> <tr> <td>20점</td> <td>16점</td> <td>12점</td> <td>8점</td> <td>4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시험 점수 <b>고득점자 순</b>으로 최종합격자 결정</li> </ul>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16점	12점	8점	4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16점	12점	8점	4점								
평정요소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b>만점의 40% 미만</b> 득점자											
등점자 합격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② 서류전형 고득점자 ③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span style="float: right;">※ 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동일</span>											

## 8 가산특전

구 분	적용대상 및 가점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li> <li>◦ <b>서류전형 만점의 5%</b></li> </ul>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6개월 이상 근무 후 수료한 자</li> <li>◦ <b>서류전형 만점의 1% 또는 2%</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수료일로부터 2년 이후</th> </tr> <tr> <td><b>2%</b></td> <td><b>1%</b></td> </tr> </table>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수료일로부터 2년 이후	<b>2%</b>	<b>1%</b>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수료일로부터 2년 이후					
<b>2%</b>	<b>1%</b>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적용

※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점수에만 적용하며, 두 항목 모두 해당할 시 중복 적용 가능

※ 전형단계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9

## 면접시험 시 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면접전형 응시자			
제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접시험 당일 제출</li> <li>※ 당일 서류 미제출 시 <b>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재제출 기회</b> 부여 (3일 이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li> </ul>			
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li> <li>발급기한을 경과한 서류 제출 시 <b>미제출로 간주</b></li> </ul>			
제출서류	연번	증빙서류	발급기한	유의사항
	1	주민등록초본	면접일 기준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명한 경우 개명사항을 포함하여 발급</li> <li>병역사항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병적 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li> </ul>
	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우선순위 반영을 위한</li> <li>제출처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발급</li> </ul>
	3	장애인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li> <li>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li> </ul>
	4	① 자격증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사항에 대하여 ① 또는 ② 중 선택하여 제출</li> <li>응시원서 내 기재한 자격사항 일체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li> <li>진위여부 확인 기간이 제한된 자격증의 경우 면접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를 재요청할 수 있음</li> </ul>
		② 자격취득확인서	면접일 기준 3개월 이내	
5	① 경력(재직)증명서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 2가지 모두 제출 필요</li> <li>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를 포함하여 응시원서 내 기재한 경력사항 일체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li> <li>응시원서에 입력한 경력기간이 증명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li> <li>해당 기관이 폐업한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동의서' 제출로 ① 서류 대체 가능</li> </ul>	
	② 4대보험 중 1개의 자격득실확인서	면접일 기준 3개월 이내		
진위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시원서와 증빙서류 일치여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li> <li>- 확인 결과 <b>사유 발생 시 면접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li> <li>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li> <li>③ 제출한 증빙서류로 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li> </ul> </li> </ul>			

※ 응시원서 내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 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므로 **응시하기 전 증빙서류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 필수**

※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 또는 최초 작성한 내용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시험결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제외됨**

## 10 예비합격자 운영

선발인원	예비합격자 2명
선발방법	최종합격자 차순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선발 및 순번 부여
선발사유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채용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용후보자 등록 후 순번 순으로 임용 ※ 예비합격자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 11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

피해자 특징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불특정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전형단계 피해자분류	서류전형 단계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특징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 부여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피해자 불특정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12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사항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최종합격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됨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
-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 공고된 채용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시험실시일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체절차 진행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단 임용이 제한됨
- 채용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사실기입,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http://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 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람
-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게시판 또는 **공단 경남서부지소 채용담당자(☎055-744-6405)**에게 문의

**【별첨1】직무기술서**

**NCS 기반 직무기술서 【심리상담직】**

채용 분야	심리 상담직	분류 체계	대분류	07. 사회복지·종교
			중분류	02. 상담
			소분류	03. 심리상담
			세분류	01. 심리상담
공단 주요 사업	-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무보호사업의 실시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지 촉진 및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형사정책 사업 - 다각적인 범죄예방활동 전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법무보호사업 :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전형 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임용			
능력 단위	■ 04 (개인심리치료 상담) ■ 05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06 (관계자 상담) ■ 07 (위기상담) ■ 09 (심리검사 활용) ■ 10 (심리상담 자료관리)			
일반 요건	연령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및 60세 이하(공단 정년)		
	성별	무관		
교육 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직무 수행 내용	■ 법무보호대상자 위험군 분류 및 정신건강관리 ■ 법무보호대상자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 법무보호대상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 ■ 법무보호대상자 사례관리 및 위기개입 ■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 수행 ■ 그룹웨어·법무보호전산시스템 사용 및 운용 ■ 법무보호사업을 위한 문서 기안 및 행정 업무 처리 ■ 법무보호사업 관련 자원봉사자 관리 및 회의 등 지원			
필요 지식	■ (개인 심리치료 상담) 개인정보 보호법, 상담자 윤리강령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기 개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연구조사 방법, 요구도 조사 원리, 집단상담 이론 ■ (관계자 상담)			

	<p>대인과정 기술, 사례개념화 원리와 절차, 상담과정, 주요상담 이론, 커플 상담의 기본 원리와 절차, 커플 간 의사소통과 역동에 관한 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위기상담)</b> 위기상담 이론, 위기유형 분류 기준, 자살심리이론</li> <li>▪ <b>(심리검사 활용)</b> 심리검사 실시, 심리검사의 내용, 종류, 신뢰도, 타당도, 심리검사 윤리강령</li> <li>▪ <b>(심리상담 자료관리)</b> 개인정보보호법, 내담자 비밀보장의 원칙, 상담자 윤리강령</li> </ul>
<p>필요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인 심리치료 상담)</b> 기관의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내담자의 언어표현과 행동단서의 반영, 내담자의 언어적 메시지의 요약, 라포(rapport)형성 기술</li> <li>▪ <b>(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b> 요구조사 실시 능력, 자료 조사, 분석, 평가 능력, 정보분석, 활용 능력, 프로그램 매뉴얼 작성 기술,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작성</li> <li>▪ <b>(관계자 상담)</b> 사례개념화 능력, 상호작용 촉진 능력, 퍼플과 친밀한 관계 형성 능력, 커플 상담 기법</li> <li>▪ <b>(위기상담)</b> 내담자와 상담자의 안전 확보 능력, 위기수준 평가 능력, 위기 유형의 분류 능력</li> <li>▪ <b>(심리검사 활용)</b> 경청기술, 내담자 행동관찰 기술, 심리검사 선정 기술, 질문기술, 호소문제 분석 기술</li> <li>▪ <b>(심리상담 자료관리)</b>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내담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상담자 윤리 준수 능력, 상담자 윤리강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li> </ul>
<p>직무 수행 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인 심리치료 상담)</b>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태도, 내담자를 이해하려는 태도, 내담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자세, 상담의 긍정적 기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 상담자와 내담자의 책임에 대한 이해</li> <li>▪ <b>(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b> 자료를 다양하게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 태도, 지역사회 및 인간 욕구에 대한 민감성 참가자 선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li> <li>▪ <b>(관계자 상담)</b> 경청하는 태도,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는 태도, 커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li> <li>▪ <b>(위기상담)</b> 위기상담 대상자의 안전을 우선 시 하는 태도, 상담 윤리강령을 준수하려는 태도</li> <li>▪ <b>(심리검사 활용)</b> 가치중립적 태도, 내담자를 도우려는 조력자적 태도, 내담자의 특성에 유연한 태도</li> <li>▪ <b>(심리상담 자료관리)</b>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태도,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다루는 태도, 상담자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li> </ul>
<p>필요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등</li> </ul>
<p>직업 기초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li> </ul>
<p>참고 사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koreha.or.kr">www.koreha.or.kr</a>, <a href="http://www.ncs.go.kr">www.ncs.go.kr</a></li> <li>▪ 위 직무기술서는 현재 개발된 NCS 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직무와 관련된 NCS를 연계 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용어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li> <li>▪ 직무기술서 직무내용은 기관 사정에 맞게 작성되었으며, 향후 NCS 개발 동향과 주요사업 변경 등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별첨2】 임용 결격사유

#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별첨3】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